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학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과 기숙사비 카드 납부의 법적 근거 마련, 방과 후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12. 본회의 통과 법률 주요 내용 >

법률명	주요내용	개정 후 효과
고등교육법	· 학·석·박사 통합과정 법적근거 마련 · 기숙사비 카드 납부 등 법적 근거 마련	·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 학사학위부터 박사 학위까지 전 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 운영 가능 · 기숙사비 납부 부담 완화 및 기숙사 운영 투명성 확보
초·중등교육법	· 방과 후 학생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출입문, 복도 계단 등 CCTV 필수설치장소 규정, 학생 안전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학생 이동이 많은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기대

<1> 고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 (제11조의2) 공포 후 1년)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사 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통합한 과정(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99-2(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복합(AI+X) 인재 양성)’ 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방안(’25.11월)’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사, 석사, 박사 각 학위 과정별 칸막이를 넘어, 전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최대 2년 6개월 단축 검토)이다. 이를 통해 통상 8년(학사4년, 석사2년, 박사2년)이 소요되는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인재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납부 부담을 완화하였고,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 공포 후 6개월)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교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장이 시행하는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 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개정 이후 학교에서의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학교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점검과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법 개정이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관영 (044-203-6170)
		담당자	사무관	이일경 (044-203-6173)
<고등교육법 학·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정책관 대학학사운영과	책임자	과 장	박형식 (044-203-6845)
		담당자	사무관	김동석 (044-203-6850)
<고등교육법 기숙사비 카드납부 등>	대학지원관 대학시설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문태 (044-203-7172)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044-203-7181)
<초·중등 교육법>	학생건강안전정책국 교육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창주 (044-203-6657)
		담당자	사무관	이영지 (044-203-6658)

붙임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평가 등) (생략)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생략)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11조의3(평가 등)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현행 제11조의3과 같음)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은 제외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
--	---	---

<신 설>	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생 략)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	제31조(수업연한) ① ----- -----. 1. (현행과 같음) 2. ----- ----통합 및 연계과정----- ----- -----. 3. (현행과 같음) 4. -----

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신 설>	----통합 및 연계과정----- ----- -----. 5.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 및 연계과정: 8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생 략) 제33조(입학자격) ① (생 략)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입학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
③·④ (생 략) 제35조(학위의 수여) ①·② (생 략)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학위의 수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통합되거나 연계된----- ----- -----

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 설> ⑤·⑥ (생 략) 제59조(각종학교) ① ~ ③ (생	----- ----- ----- ----- ----- ④ ----- ----<u>통합되거나 연계된</u>----- ----- ----- ----- ----- ----- ----- ⑤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59조(각종학교) ① ~ ③ (현행	략)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서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6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생 략) 제64조(벌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 략)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 4. (생 략)	과 같음) ④ ----- ----- ----- ----- ----- -----<u>제7항</u>----- -----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 -----<u>제5항</u>----- ----- ----- ----- ----- 3. 4.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생 략)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u>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u>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3. (현행과 같음) 4. <u>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u> ④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